##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 복지달력 제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279

제출연월일: 2024. 5. 30.

제 출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1. 개정이유

영유아 보육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행정·복지 정보를 담고 있는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복지 달력의 배부대상을 저출산 및 인구 감소 추세 속 정보수혜대상자인 영유아 세대까지 확대 배부하여 정보·시책 전달의 효율성과 구정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제4조(배부대상): 제4호 라목 신설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가정

나. 제7조(시행규칙): 삭제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따로 붙임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 평가: 개선사항 없음(가족복지과-6977호, 2024. 4. 25.)

라. 입법예고: 2024. 4. 29. ~ 5. 20.(21일간) / 의견없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 복지달력 제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 복지달력 제작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가정

제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배부대상) 달력의 배부대	제4조(배부대상)
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관내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	4
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	
지 대상자"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라.「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가정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삭 제>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 근 거 법 규

### □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주민의 복지증진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 복지달력 제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 복지달력 제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이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 3. 작성자

○ 소 속: 기획예산실

○ 직 급: 지방행정서기

○ 성 명: 유영진

○ 연락처: (052)290-3064